濠-中 FTA가 우리상품의 대호주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

2005. 5

KOTRA 해외조사팀

- 목 차 -

[요약]

Ⅰ. 호-중 FTA 추진 동향 및 배경 1

Ⅱ. 대호수출 동향 및 중국과의 경쟁현황 3

Ⅲ. 호-중 FTA 체결 시 영향 11

1. 중국 상품 수입관세 변화 전망 11
(호-태국 FTA 사례 원용)

2. 주요 수출 품목별 파급 효과 14

3. 원산지 규정에 따른 영향 18

Ⅳ. 시사점 20

[요 약]

지난 달 호주의 하워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FTA 협상체결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호-중 FTA는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갔다. 양국은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7년 경에 호-중 FTA를 정식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강화와 거대한 중국시장의 선점을 노리는 호주의 의도를 감안할 때, 호-중 FTA는 지난해 호주가 체결한 태국·미국과의 두 건의 FTA 중 호주입장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했던 태국과의 FTA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

호-태국 FTA를 토대로 분석할 때, 호-중 FTA 이후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한 관세격차가 10%에 이르는 품목이 6개, 5%에 이르는 품목이 6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, 호-중 FTA는 우리의 대호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고려할 때, 호-중 FTA는 우리기업의 대호우회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게 될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

호-중 FTA는 세계 곳곳에서 심화될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바, 우리 기업과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.

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 전략

► 주력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개발
► 보다 적극적인 FTA 추진
► 중국 진출 기업의 활용
► 부품산업의 고도화

Ⅰ. 호-중 FTA 추진 동향 및 배경

1. 추진동향

<표1: 호-중 FTA 추진과정>

일시	내용
2003. 10	호-중 FTA 타당성연구 개시
2005. 3	호-증 FTA 타당성연구 완료
2005. 4	호-중 FTA 체결협상 의향서 공식 서명
	호-중 FTA 타당성연구 결과 공식 발표
2007	호-중 FTA 체결 예상

□ 지난 4월 공식 체결협상 개시

○ 1997년 호주의 하워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의 상호 관심 증대

○ 수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2003년 10월, FTA 타당성 연구가 시작됨

○ 지난 4월 18일 하워드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중, 양 정상이 호-중 FTA 체결협상 의향서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본격 착수

- 2년 내 체결협상을 마무리하여 2007년 중 FTA 체결 예정

2. 추진배경

□ 최근 상호 중요성 급격히 증가

○ 지난 3년간 양국간 교역규모가 평균 30%가량 증가하면서 양국의 상호 경제적 중요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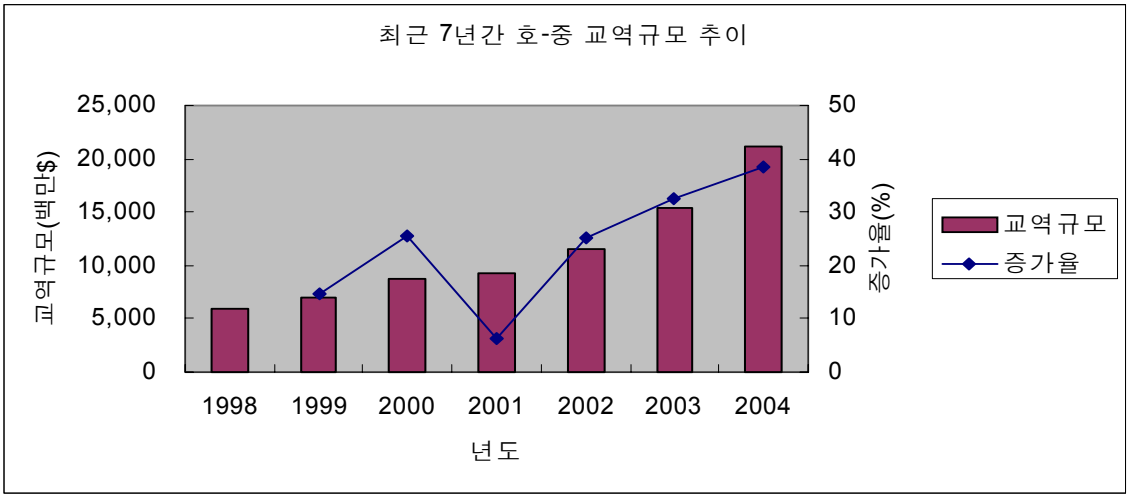

자료원: World Trade Atlas

- 2004년 기준, 호주는 중국의 9위의 교역 상대국이고, 중국은 호주의 3위 교역 상대국임

□ 미국·EU에 앞서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호주

○ 거대한 농축산물 수출시장을 확보하고, 금융·교육 등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적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

- FTA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□ 구미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중국

○ 중국은 최초로 시장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고, 이번 FTA가 미국·EU 등과의 FTA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

의미를 가짐

○ 보다 안정적인 원자재 도입을 위한 목적도 있음
- 중국은 철광석,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입을 호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, 원자재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Ⅱ. 대호수출 동향 및 중국과의 경쟁현황

□ 수출동향

○ 우리나라의 대호 수출은 2000년의 26.1억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
- 2004년 기준, 수출총액이 33.7억 달러에 이르고 호주는 우리의 제 15위 수출대상국임

○ 대호수출 일부 품목에 편중
- 2004년 대호수출 33.7억 달러 중 2/3에 해당하는 22억 달러가 자동차,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의 몫이며, 석유화학원료, 종이, 연료, 철강제품 및 타이어 등의 품목도 1억 달러 이상을 수출

<표2: 20대 품목군별 대호 수출실적(HS코드 2단위 기준)>

(단위: US$백만, %)

순위	HS 코드	품목명	2002년	2003년	2004년		
					금액	증가율	비중
		총계	2,339	3,272	3,378	3.3	100
1	85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	488	762	1,052	38	31.2

2	87	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	376	454	666	46.6	19.7
3	84	기계류 및 부분품	373	475	499	5	14.8
4	39	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원료	102	124	148	19.7	4.4
5	48	종이제품	68	102	127	24.5	3.8
6	27	광물성연료 (벤젠, 경유, 휘발유)	65	58	126	116.9	3.7
7	72	철강	65	80	122	51.5	3.6
8	40	고무와 그 제품(타이어 등)	75	90	100	11.1	3.0
9	73	철강의 제품	63	73	86	18.2	2.6
10	29	유기화학품	36	47	72	50.5	2.1
11	71	귀석, 귀금속, 모조장신구, 주화	354	165	49	-70.3	1.5
12	74	동과 그 제품	21	19	38	92.4	1.1
13	54	인조장섬유	29	22	19	-13.5	0.6
14	90	광학, 측정, 의료용기기 및 부품	11	16	18	7.1	0.5
15	60	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	13	17	17	0.5	0.5
16	55	인조단섬유	10	9	15	56.3	0.5
17	28	무기화학품	14	13	15	14.3	0.4
18	76	알루미늄과 그 제품	11	12	12	4	0.4
19	19	곡물, 곡물의 조제품 (비스켓 등)	9	11	12	11.4	0.4
20	32	염료, 안료, 페인트, 잉크	7	9	12	28	0.4

자료원 : KOTIS

○ 전기전자, 차량, 연료,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은 수출신장세가 두드러지나, 귀금속 가공품은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음

○ 섬유 관련제품은 품목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, 이미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상품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음

□ 호주시장에서의 한-중 경쟁 현황

<표3: 최근 2년간 한-중 대호수출 비교>

(단위: 백만불)

	한국	중국
2003	3,272	6,265
2004	3,378	8,840

자료원: KOTIS

○ 수출규모면에서는 중국이 월등히 앞서 있음

- 중국의 대호수출은 최근 3년 사이 평균 30%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기준, 한국의 2.6배 정도임
- 우리의 110대 주요수출품목[1]을 보면, 이들 상품이 중국의 대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.4%로 한국의 81.2% 보다 상당히 낮으나 규모면에서는 오히려 4.7억 달러 가량 많음

○ 110대 품목 기준 경쟁 상황

- 110대 품목 중 중국이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, 에어컨, 모조장신구, 유선전화기, 비디오카메라 등 34개 품목에 이르며, 우리 수출액의 50~99%정도를 수출하는 품목 수는 14개, 10~49% 정도를 수출하는 품목 수는 38개로 조사됨

○ IT・가전제품 경쟁 치열

- 우리의 수출이 5천만 달러를 넘는 주력 상품 중 중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품목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(휴대폰), 칼라 TV, 컴퓨터, 에어컨 등 4개 품목으로 나타남
- 이들 품목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으로

1) 단일품목 기준, 대호수출이 4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품목

알려져 있음

○ 호-중 FTA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이 확대될 전망

- 앞으로, 호주-중국 간 FTA가 체결되면 세부품목별로 상황은 다소 다르겠지만 우리의 110대 수출상품 중 중국이 우리의 10% 이상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은 추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

<표4: 2004년도 한국·중국의 대호주 품목별 수출실적>

(한국 110대 수출상품 기준)

(단위 : US$백만)

HS코드 (6단위)	품목명	대호수출		FTA 시 관세격차
		한국	중국	
	총계(A)	3,378	13,155	
852520	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(휴대폰)	483	371	0
870323	승용차(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)	315	1	10
852812	TV 수상기(칼라)	255	240	5
870322	승용차(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)	127	0	10
841810	냉장·냉동고 (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)	85	3	5
271019	경질석유 및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	82	0	종량세
870899	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	74	14	5 or 10
847160	컴퓨터(입력/출력/기억장치 내장 여부를 불문)	72	540	0
870324	승용차(실린더용량 3000CC초과)	53	0	10
841510	에어컨(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)	51	122	5
870421	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	43	0	5
842952	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	42	1	5
401120	고무제 공기타이어 (버스. 화물차용)	39	54	5
852190	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의 부분품	38	165	0

480100	신문용지 (롤상 또는 쉬이트상의 것)	36	0	5
401110	고무제 공기타이어 (승용자동차용)	35	17	5
290220	벤젠	32	0	A$0.38
851750	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기기	31	25	0
711319	기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	30	16	5
847130	휴대용 디지탈 자동자료처리기계(10Kg 이하)	27	444	0
847170	기억장치(램, 롬, 플로피디스크 등)	27	75	0
845011	완전자동세탁기 (10Kg 미만)	26	7	5
270710	벤조올	23	0	A$0.38
851220	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	23	3	5
852990	무선송수신기, 레이더, TV수상기의 기타부분품	23	23	5
390110	폴리에틸렌 (비중 0.94미만)	18	0	0
842720	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	18	2	5
851790	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	18	30	0
721070	철,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(페인트, 프라스틱 도포)	17	0	5
870333	기타 차량, 실린더용량 2500CC초과(피스톤식)	17	0	10
741999	기타 동제품	15	2	5
852821	천연색의 영상모니터	15	14	0
850710	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	14	5	5
390210	폴리프로필렌	13	0	0
390330	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-스티렌 공중합체(ABS)	12	0	0
400219	스티렌-부타디엔고무(카르복시화한 것 포함)	12	0	5
550320	폴리에스테르단섬유 (방적준비처리 않은 것)	12	2	0
721633	H형강(열간압연·인발·압출,80mm 이상)	12	0	5
741110	정제한 동제의 관	12	3	5
846299	기계식 프레스 (단조, 해머링 등 금속가공기계)	12	0	0

271011	경질석유 및 조제품	11	31	종량세
392190	플라스틱제의 기타 판, 쉬이트, 필름, 박, 스트립	11	4	5
730660	철강제 중공프로파일 (원형이 아닌 것, 용접한 것)	11	8	1
841480	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, 기타 후드	11	23	5
852540	비디오카메라·디지털 카메라	11	126	5
854460	기타의 전기도체(전압 1KV초과)	11	1	5
390760	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	10	0	0
710813	기타 일차제품형상의 금	10	0	0
721240	철,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(페인트, 프라스틱 도포)	10	1	5
842211	가정형 접시세척기	10	5	5
847330	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	10	288	0
870190	8701호중 일부 트랙터, 무한궤도식 제외	10	3	5
292910	이소시아네이트	9	0	0
721061	철,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(알미늄-아연합금 도금)	9	0	5
721933	스테인리스강의 냉간평판압연제품(두께1~3mm)	9	4	5
730539	용접한 강관 (원형횡단면 외경 406.4mm 초과)	9	0	5
730610	오일·가스배관용의 철강제 파이프라인	9	1	5
851650	마이크로웨이브 오븐	9	30	0
854411	동제의 권선용전선	9	0	5
390120	폴리에틸렌 (비중 0.94이상)	8	0	0
392690	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	8	71	5
540761	합성필라멘트사 직물 (PE 함유량이 85% 이상)	8	1	5
850131	전동기(출력 750W초과의 것)	8	6	5

854420	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	8	11	5
731210	철강제의 연선·로프·케이블 (전기절연한 것 제외)	7	4	5
850910	진공소제기	7	33	5
852530	텔레비전 카메라	7	2	5
870829	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	7	3	10
281512	액체의 수산화나트륨 (소다 ,액상소다)	6	0	0
481013	롤상의 인쇄용지, 판지 (인쇄된 전산용지는 5%)	6	0	5
721934	스테인리스 냉간압연평판 (0.5mm 미만 1mm 이상)	6	1	5
731700	철강제의 못·압정·제도용핀·스테이플 등	6	11	5
847150	디지털 처리장치 (8471.41/8471.49호 이외의 것)	6	50	0
851999	기타 음성재생기	6	32	5
960610	프레스/스냅 파스너와 그 부분품	6	0	5
190230	기타 파스타(라면 등)	5	2	5
321410	매스틱 및 도장용 충전제	5	3	5
392410	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	5	32	5
401310	승용자동차의 고무제의 인너튜우브	5	0	5
710812	기타 가공하지 않은 형상의 금	5	0	0
720851	철, 비합금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(두께10mm 초과)	5	2	0
722990	기타 합금강의 기타 선	5	0	1
730890	기타 철강제 구조물과 부분품	5	13	5
731815	기타 스크루와 볼트 (철강제의 것)	5	28	5
841340	콘크리트 펌프	5	1	5
843149	크레인, 엑스커베이터, 항타기 및 부분품	5	4	5
848071	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금형	5	2	5
848180	기타의 기기(농업 트랙터의 것은 무세)	5	43	5
848210	보올 베어링	5	0	10

851632	전기가열식의 기타 이용기기	5	13	0
870839	자동차용 제동장치와 브레이크 부스터	5	9	5
190590	기타 베이커리제품(비스켓 등)	4	15	0
270750	기타 방향족 탄화수소혼합물	4	0	A$0.38
270799	기타 고온 코올타르증류물	4	0	종량세
290230	톨루엔	4	0	A$0.38
291735	무수프탈산	4	0	5
382490	38류(화학제품)의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품목	4	8	A$0.38
390311	발포성의 폴리스티렌	4	0	0
392020	프로필렌 중합체의 판, 쉬트 필름 등	4	1	5
490199	기타 인쇄서적(외국어 판)	4	36	0
711719	비금속제의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	4	17	5
721069	철,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(폭 600mm 이상)	4	0	5
721710	도금 도포하지 않은 철 비합금강의 선	4	2	1
730791	철강제 플랜지 (관 연결구)	4	4	5
760711	압연가공 알미늄 박(두께 0.2mm 미만)	4	3	5
780600	연제의 기타제품	4	0	5
851829	기타 확성기	4	15	5
853650	기타 개폐기 (전압 1,000V이하)	4	8	5
854459	기타의 전기도체 (전압 80v 초과 1Kv 이하)	4	10	5
950330	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	4	10	5
	합계(B)	2744	3210	
	비중(%, B/Ax100)	81.2	24.4	

자료원 : KOTIS, 호주 관세청 통계

주 : 종량세로 기재된 부분은 리터당 A$0.03~0.4의 종량세 격차가 있는 것이며, A$0.38표기는 리터당 표기를 생략한 것임

Ⅲ. 호-중 FTA 체결 시 영향

1. 중국 상품 수입관세 변화 전망

(호-태국 FTA 사례 원용)

□ 호주는 지난해 2건의 FTA에서 다른 태도 보임

○ FTA를 체결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하나 두 나라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단기간(통상 5년) 유예하거나 연차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갈 수도 있음

○ 호주는 태국과의 FTA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함

- 호주는 지난해 미국, 태국과 두 건의 FTA를 체결했고, 두 FTA 모두에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당분간 유예함
- 파급효과가 커서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펴 온 자동차산업의 경우 태국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관세를 완전 철폐했으나 미국과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, 대조적인 태도를 보임
- 이러한 차이는 태국이 매년 1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일로서,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호주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음

○ 중국과의 FTA도 태국과 비슷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
-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인 이유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(특히 서비스 부문)을 미국·EU에 앞서 선점하고자하는 목적을 감안할 때, 호주는 중국과의 FTA에서도 많은 양보를 할 것으로 보임
- 다만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서방국가가 된다는 점이 다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

□ 예상 관세격차 및 관세유예 품목

○ 관세격차는 최대 10%까지 벌어질 전망
- 현재 호주가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은 3.5%에 불과함
- 110대 수출상품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, 15개 품목만 1%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(한국산에 5%, 중국산에 4%적용)
- 현재 관세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%까지 벌어지면서 우리의 대호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

<표5: 호-중 FTA 발효직후 발생할 관세격차>

구분	품목수	주요 해당품목
10% 격차 발생	6	승용차(대, 중, 소형), 기타차량, 자동차 부품, 볼베어링
5% 격차 발생	66	칼라TV, 냉장냉동고, 화물차, 타이어, 신문용지, 모조장신구 등
1% 격차 발생	3	강관(원형외의 것), 강선(합금강, 비합금강)
종량관세 격차발생	8	유류제품(연료),벤졸 등 화학제품
격차 발생 없음	27	휴대폰, 컴퓨터, 유선전화기, 석유화학제품, 기계식 프레스 등
합계	110	

주: 호주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, TCF(직물,의류,신발)산업 분야를 제외하면 무세 또는 5%(일부는 중진개도국산에 4%)를 적용하고 있으나, 자국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는 직물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관세(General Rate)도 5%로 낮추기로 확정한 바, 연차적 관세격차를 산출해야 하나, 편의상 2005~2010년 기간 중 양국 FTA가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발효직후의 관세격차를 표기한 것임

○ 자동차・가전 등에 악영향

-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류의 경우 격차가 무려 10%에 이르러, 대호수출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기・전자제품, 타이어, 신문용지 등의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
- 반면 휴대폰, 컴퓨터, 유선전화기 등은 현재 수입관세가 무세(0%)이기 때문에 호-중 FTA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
○ 일부 품목 당분간 관세 유지

- 호주가 태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철폐를 당분간 유예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과 타이어, 직물, 일부 기계요소, 철강제품, 자동차부품 등 일부에 불과하며,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철폐할 것을 확정한 상태임

<표6: 호-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관세철폐 유예품목>

HS코드 (6단위)	품목명	수입관세(%)	
		대한국	대중국
		현재(2010년)	현재-FTA(2010년)
390110	폴리에틸렌 (비중 0.94미만)	5(5)	5-5-(0) #
390120	폴리에틸렌 (비중 0.94이상)	5(5)	5-5-(0) #
390210	폴리프로필렌	5(5)	5-5-(0) #
390311	발포성의 폴리스티렌	5(5)	5-5-(0) #
390330	ABS 공중합체	5(5)	5-5-(0) #
390760	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	5(5)	5-5-(0) #
401110	승용자동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	10(5)	10-5-(0)
401120	버스・화물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	10(5)	10-5-(0)

540761	합성필라멘트사 직물(PE함유량 85%이상)	10(10)	10-5-(0)
721710	도금 도포하지 않은 철 비합금강의 선	5(5)	4-4-(0)
730660	강관과 중공프로파일 (원형외의 용접한 것)	5(5)	4-4-(0)
731815	기타 스크루와 볼트 (철강제)	10(5)	10-5-(0)
850710	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	10(5)	10-5-(0)
851220	기타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	10(5)	10-5-(0)
851999	기타 음성재생기	10(5)	10-5-(0)
853650	기타 개폐기(전압 1Kv이하) *	5/10(5/5)	5/10-0/5-(0)
870839	자동차용 기타 제동장치, 브레이크 부스터**	5/10(5/5)	5/10-0/5-(0)
870899	자동차용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***	0/10(0/5)	0/10-'0/5-(0)

주: #표는 호주의 대태국 FTA에서 2008년부터 관세철폐예정이나, 발효 3년 후 철폐되는 것인 바, 중국에는 2010년에 적용될 가능성이 큼
*표: 자동차용은 10%, **표: 트랙터용은 5%, ***표: 트랙터용은 무세

2. 주요 수출 품목별 파급 효과

□ 자동차

○ 중국에는 100여개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, 2004년에는 444만대를 생산했음

○ 호-중 FTA 체결로 10%의 관세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산 자동차의 호주 진출 증가로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

- 2005년부터 발효된 호-태 FTA로 인해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산 소형차의 호주수출 증가로 한국산차의 호주시장 점유율이 위협

을 받고 있음

□ 전기전자제품

○ 5%의 관세격차 발생하나 큰 영향을 없을 듯
- TV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비디오카메라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호-중 FTA 체결로 5%의 관세격차가 발생하게 됨
- 가전제품은 브랜드 시장이기 때문에 5%의 관세격차가 대호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

○ 중고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
- 이미 TV와 에어컨의 경우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면서 중국제품이 중저가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, 관세혜택으로 그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, 우리 제품은 중고가품 시장으로 타겟을 전환하고 있음

○ 휴대폰, 컴퓨터 및 부품, 유선전화기 등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

□ 타이어

○ FTA 이후에도 관세격차는 5%
- 타이어의 경우, 현재 한국산과 중국산에 똑같이 10%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
- 호-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지 않고 2010년까지는 5%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, 우리나라산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는 5%로 인하되기 때문에 동 FTA가 주는 관세격차 효과는 5%임

○ 중국 타이어의 품질 개선 시 위기가 올 수도 있음

- 타이어도 브랜드시장 성격을 띠고 있긴 하나, 중국에서 생산한 다국적기업 제품들의 품질수준이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, 소매가격 격차(현재 약 20% 내외)가 더 벌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자동차 부품

○ 한국차 판매와 호주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변함이 없는 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

- 타이어와 마찬가지로, 현재 10%로 관세차이가 없고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0년경에도 관세 차이는 5%가 될 것으로 보임
- 한국산 자동차의 누적 판매대수는 이미 60만대를 초과한 상태이며 매년 최소한 7만대 이상이 추가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체용 부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호주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선호행태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, 시장 점유율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됨

□ 유류제품

○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

- 유류제품의 경우, 현재 한국산과 중국산에 똑같이 종류에 따라 리터당 A$0.03~0.4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음
- FTA 체결 시 중국산에 대해서는 무세가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바, 우리나라산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동품이 계절적 수급 조절용의 거래가 많음을 감안할 때,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음

□ 석유화학제품

○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, 가공된 제품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

- PE, PP 등 석유화학원료의 경우, 현재 한국산과 중국산에 똑같이 5%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, 호-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지 않고 2010년까지는 5%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우리나라산에 석유화학원료(HS 390류)의 대호수출이 7천만 달러를 넘고 있으나 중국산의 진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바,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호주기업들의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
- 반면 플라스틱제 주방용품과 같이 가공된 제품의 경우 FTA체결과 동시에 중국산에 대한 관세 5%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우리시장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

□ 종이제품

○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어 수출전선에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임

- 신문용지, 인쇄용지 및 판지 등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과의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FTA 체결로 중국이 5%의 관세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나,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

□ 철강제품

○ HS코드 73류 철강제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

- HS코드 72류의 가공도가 낮은 벌크형 철강제품은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산을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음

- 한국산은 일괄 5%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, 중국산은 일부가 면세, 대부분이 4%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, FTA가 발효되면 강선(2010년까지 4% 유지 예상)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
- 그러나 HS코드 72류의 철강제품은 수출국 수급사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덜 할 것으로 예상됨
- HS코드 73류의 철강제품(강관, 케이블, 못, 볼트, 너트, 플랜지 등)의 경우, 중국의 수출이 우리와 비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, FTA가 체결되면 5%의 관세격차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제품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
3. 원산지 규정에 따른 영향

□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을 고려할 때, 호-중 FTA가 대호우회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음

- 위에서 살펴 본 품목별 전망은 우리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하여 생산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한 것임
- 중국에 투자진출한 외국기업 중 홍콩을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호-중 FTA의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<표6: 대중국 투자진출 외국기업 현황(2004.9.22일 기준)>

국별	FDI 프로젝트 수	투자신고금액(US$억)	실 투자금액(US$억)
홍콩	13,633	407	177
한국	4,920	91	44

대만	4,495	85	33
미국	4,060	101	41
일본	3,254	79	50
싱가폴	1,144	34	20
캐나다	901	16	5
마카오	580	12	4
영국	438	12	7
말레이시아	350	9	2
총계(기타 포함)	41,081	1,150	535

자료원 : Invest in China/www.fdi.gov.cn

□ 호-중 FTA의 원산지 규정이 변수로 작용

○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상품을 FTA 혜택을 받으면서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, 이런 반사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호-중 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

- 현재 호주와 중국은 원산지규정을 품목분류번호 변경 시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CTC방식과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는 Value-added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, 중국은 CTC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CTC방식을 채택할 때에도 세번 4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6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며, Value-added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율을 25%로 할 것인지 통상적인 50%로 할 것인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Ⅳ. 시사점

□ 호-중 FTA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의 시발점

- 저렴한 노동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음
- 이런 관점에서 호-중 FTA는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으며,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시점임

□ 대응 전략

○ 주력 상품의 고부가치화 및 신산업 개발
- 중국은 범용 제품을 넘어서 첨단 제품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, 우리는 아직까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야 함
-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술우위를 점해야하며, 이를 위해서는 IT, 자동차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물론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이, 타이어 산업 등의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
- 한편 아직 중국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BT, NT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, 수출동력화해야 함

○ 보다 적극적인 FTA 추진
- 중국은 이미 홍콩·마카오와 FTA를 체결했고, 20여개국과 FTA를 추진 중임
- 10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가진 중국은 매우 매력적인 FTA 대상으로 FTA 체결 국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
-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 상, 우리나라도 보다

적극적으로 주요국과의 FTA를 추진해야하며, 중국이 먼저 맺게 되는 FTA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

○ 중국 진출 기업의 활용
-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정 결과에 따라 호-중 FTA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
-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예의 주시하며, 필요할 경우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
- 특히, 단일상품 수출규모가 큰 자동차, 가전, 타이어 등의 경우 중국 현지공장의 원산지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, 2년 후에는 어느 정도로 달라질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, Value-added 방식이 채택될 경우 대비해야 함

○ 부품산업의 고도화
- 중국이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고수하는 한 지속적으로 부품과 자본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
- 우리 기업은 부품 및 자본재 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수요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힘쓰고, 정부는 이를 위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함

○ 호주 시장은 좋은 시험 무대
- 중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에 따라 중국제품에 비해 우리 제품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전망임
- 따라서 호-중 FTA에 따라 변화할 호주 시장은 우리 제품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적절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우리 기업과 정부는 호-중 FTA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, 수출경쟁력을 보다 높임으로써 향후 보다 심화될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

작 성 자

◈ 김은성 부장(시드니 무역관)
◈ 윤하청 대리(해외조사팀)